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정 2003.6.1, 최종개정일 2022.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9조에 의하여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에 적용하며, 대학원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학업성적, 출결상황, 미등록 등 학사행정 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포 상

제3조(포상의 종류·대상) ①포상의 종류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변경 2018.3.1.)

1.총장상 : 각 단과대학 소속학부(과)에서 최고학점을 취득하고, 품행이 방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과대학별 1명)

2.학장상 : 각 학부(과) 수석 졸업예정자 (변경 2018.3.1.)

3.공로상 : 다음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

가.금상 : 총학생회장, 전국학·예술대회 및 경진대회 1위 입상자, 국제전 규모 금상 입상자,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 대회의 개인 및 단체종목 우승자(주전선수에 한함), 체육특기자로서 국가대표에 선발된 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생으로 해당소속장의 추천을 받은 자(변경 2018.3.1.)

나.은상 : 총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 생활관자치회장, 교내언론사 편집장(실무국장), 학군단 명예위원장, 전국학·예술대회 및 경진대회 2위 입상자,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 대회의 개인 및 단체종목 준우승자(주전선수에 한함), 국제전 규모 입선 학생, 명지기독교학생연합회장,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생으로 해당소속장의 추천을 받은 자(변경 2004.3.2., 2018.3.1.)

다.동상 : 전국학·예술대회 및 경진대회 입상자,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 대회의 개인 및 단체종목 3위 입상자(주전선수에 한함), 전국규모 외부기관 공모전 2위 이내 당선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생(각 학과(부) 1명, 홍보, 각종 특기자)으로 해당소속장의 추천을 받은 자(변경 2018.3.1.)

4.봉사상 : 다음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

가.대상 : 재학기간 중 500시간 이상의 최다시간 봉사활동 경력자 및 봉사활동으로 학교 및 사회의 귀감이 되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캠퍼스별 1명) (변경 2018.3.1.)

나.금상 : 교내·외 사회봉사단 대표 또는 재학기간 중 4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력자

다.은상 : 재학기간 중 3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력자

라.동상 : 재학기간 중 2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력자(변경 2018.3.1.)

②외부기관에서 포상 대상자의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와 우리 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공적을 남긴 재학생 또는 졸업자에게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포상자격·제한) ①제3조 제3호의 포상대상자는 평균평점 2.5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 미달자는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포상의 발의) ①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처장은 단과대학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변경 2010.3.1., 2022.3.1.)

②제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변경 2010.3.1., 2022.3.1.)

제6조(학생포상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로 학생포상심의위원회를 캠퍼스별로 둔다.

1.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캠퍼스 학생처장이 된다.(변경 2010.3.1., 2022.3.1.)

2.위원은 교육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포상심의 절차) 학생처장은 포상대상자의 추천 구비서류를 갖추어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0.3.1., 2022.3.1.)

제8조(기록) ①학생처장은 수상자 명부에 포상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변경 2010.3.1., 2022.3.1.)

②교육지원처장은 포상학생의 포상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자의 공고) 포상학생에 대하여는 그 포상사항을 공고한다.

제 3 장 징 계

제10조(징계의 구분) ①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경고 및 근신은 사회봉사활동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근신기간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2(수업배제 및 조치)①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시, 교원 또는 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퇴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교원 및 강사의 요청으로 소속대학 학장이 주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업제외, 수강과목 변경,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6.1.]

제11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2.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손한 태도나 반항을 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 3.학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한 학생
- 4.총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학생
- 5.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수업 방해 또는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변경 2018.6.1.)
 - 가.총장의 허가 없는 집단적 행위
 - 나.교원 및 강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 6.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한 학생
- 7.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8.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12조(학생징계위원회 구성)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단과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1.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한다.
- 2.단과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단과대학의 계열(학)부장 및 학과 주임교수로 하되, 위원수는 단과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요구·발의) ①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목격한 관계 교직원이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학생처장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안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변경 2010.3.1., 2022.3.1.)

- 1.사건경위서
- 2.피징계학생의 진술서(본인의 거부시 생략할 수 있음)

제14조(징계절차) ①징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생, 담임교수 및 관계 교직원의 설명 또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0.3.1., 2022.3.1.)

제15조(통보) ①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교육지원처장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10.3.1., 2022.3.1.)

②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10.3.1., 2022.3.1.)

③교육지원처장은 징계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지도·권리정지) ①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담임교수, 학과 주임교수, 계열(학)부장 및 소속 단과대학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경고 또는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되며, 제10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④제적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징계처분의 효력은 자퇴, 휴학,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신설 2018.3.1.)

제17조(징계의 해제) ①근신과 유기정학은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다. 다만, 총장은 징계기간 중 품행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무기정학은 담임교수, 학과 주임교수, 계열(학)부장 및 소속 단과대학장이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총장은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위원회의 성립·의결) 학생포상심의위원회 및 학생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생상벌에 관한규정과 학생포상에 관한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갑)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적				
주 소				
소 속			직위	
추 천 훈 격		수 공 기 간 (근 무 기 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인)				

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

(별표1) 학위수여식 포상 종류 및 대상 (신설 2018.3.1., 2019.5.1.)

구 분	자 격 조 건		인원	추 천 자	비고
설립자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르며, 명지학원 설립정신에 투철한 학생		1	캠퍼스별 교차 수상	
이사장상			1	캠퍼스별 교차 수상	
총 장 상	- 학부(과) 최우수자로 단과대학장이 추천한자		각 단과대학당 1명	각 단과대학장	
학 장 상	- 각 학과(부) 수석 졸업예정자		각 학과 (부)당1명	각 단과대학장	
공 로 상	금상	○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 체육특기자로 전국규모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종목 우승자		체육부장	
		○ 체육특기자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학생			
		○ 국제전 규모 금상 입상 학생		해당 소속장	
		○ 전국 학·예술대회 및 경진대회 1위 입상 학생 (문학, 음악, 미술, 체육, 학술, 정보, 바둑, 뮤지컬, 건축공모전, 공학, 과학부분 등)			
	○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생		해당 소속장		
	은상	○ 총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단과대학학생회장		학생처장	
		○ 명대방송국·명대신문사·영자신문사의 편집장(실무국장), 생활관 자치회장		해당 소속장	
		○ 국제전 규모 입선 학생			
		○ 전국 학·예술대회 및 경진대회 2위 입상학생			
		○ 학군단 명예위원장			
	○ 명지기독학생 연합회 회장				
	동상	○ 체육특기자로 전국규모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종목 준우승 학생		체육부장	
		○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생		해당 소속장	
○ 체육특기자로 전국규모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종목 3위 입상학생			체육부장		
○ 전국 학·예술대회 및 경진대회 입상 학생			해당 소속장		
○ 외부기관 공모전 당선자			해당 소속장		
봉 사 상	대상	○ 재학기간 중 500시간 이상의 최다시간 봉사활동 경력자		사회봉사단장	
		○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캠퍼스별 1명		
	금상	○ 교내외 사회봉사단 대표 ○ 재학기간 중 4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력자		사회봉사단장	
	은상	○ 재학기간 중 3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력자		사회봉사단장	
	동상	○ 재학기간 중 2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력자		사회봉사단장	
총동문회 장상	- 학교사랑 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학생			각 단과대학장	